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 의약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22호
- 나. 제출자 : 윤영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4. 15.
- 라. 회부일자 : 2024. 4. 15.

2.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심폐소생술 교육·홍보와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면서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안 제5조).
- 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및 관리(안 제6조~안 제7조).
- 바. 응급의료 지원(안 제8조).
- 사. 홍보 및 포상(안 제9조~안 제10조).

4.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7조의2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10개의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 안 4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 안 제5조에서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에 대하여

- 안 제6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의무시설과 권장시설에 대하여
 - 안 7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하여
 - 안 제8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및 장려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급상황 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21. 12. 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

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 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1. 3. 8., 2011. 8. 4., 2012. 2. 1., 2016. 3.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2021. 12. 21., 2023. 8. 16.>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2. 2.>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6. 12. 2., 2021. 12. 21.>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 2021. 12. 21.>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12. 5. 14.]